



##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

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

### 요약

-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개인의 장수리스크관리와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을 위해 사적연금의 연금화(annuitization)가 절실히 요구됨. 그럼에도 은퇴자의 98%가 은퇴자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와해될 우려가 있음. 따라서 연금구매자(소비자)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더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.

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헤지 연금상품(고령친화형 연금상품)이 개발되고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욱 부여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요구됨. 또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(decumulation)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대로 인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여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.
  -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개인연금제도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.
- 그럼에도 우리나라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(은퇴자금)을 연금보다는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기능으로서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.

- 2014년 1/4분기 기준(수급자 기준)으로 55세 이상 퇴직자의 98%가 일시금(lump sum)으로 퇴직 급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- 2012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약 17.2%에 불과하고 10년 후 유지율이 52.4%에 그치고 있어 실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임.<sup>1)</sup>

〈표 1〉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과 연금선택

(단위: 명, 억 원, %)

구분	일시금수령		연금수령		합계	
	수급자 수	금액	수급자 수 <sup>주)</sup>	금액	수급자 수	금액
2013. 4/4분기(%)	26,256 (97.0)	3,643 (99.0)	813 (3.0)	35 (1.0)	27,069 (100.0)	3,679 (100.0)
2014. 1/4분기(%)	55,226 (98.0)	10,062 (99.5)	1,106 (2.0)	54 (0.5)	56,332 (100.0)	10,116 (100.0)
증감	28,970	6,419	293	19	29,263	6,437

주: 분기 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임.  
자료: 금융감독원(2014).

■ 따라서 사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금재원 분배단계에서의 연금화(annuitization)가 필요함.

- 퇴직자산은 단순한 저축자산이 아닌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은퇴자산이므로 연금화를 통한 개인의 안정적 노후대비가 요구됨.
- 그럼에도 종신연금이 기본인 공적연금<sup>2)</sup>을 제외한 사적연금제도는 제도상 “연금”이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일시금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.

■ 사적연금제도의 연금화는 비단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.

- 그 이유는 일시금 수령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으로 인해 제2층인 퇴직연금과 제3층인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고령화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.

1) 금융감독원(2013. 8),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(적격개인연금 기준).

2)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신인출(종신연금)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과 차이가 있음.

- 이런 우려로 인해 영국, 호주 등 선진국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이룸.
- 이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금화(annuitization)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.
- 첫째,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를 연금상품에 의해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연금상품(고령친화형 연금상품)이 개발되어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.
  -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기하여 고연령기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(예: 고연령거치연금) 등을 개발함으로써 연금구매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    - 고연령거치연금(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)은 보통 가입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거치종신 연금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에 걸쳐 모두 인출하도록 설계되어 연금지급개시 전 일시금을 소진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함.
- 둘째, 연금전환을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.
  - 근로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디폴트 연금전환제도의 도입, 일부는 일시금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, 일정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인출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.
    - 영국은 25% 이내에서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되 75%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함.

〈표 2〉 주요국의 연금지급방식 비교

구분		일시금 허용		연금지급기간		프로그램 허용
		전부	부분	확정기간	종신	
의무전환	절대	△	×	×	○	○
	영국	△	○	×	○	○
디폴트 연금전환	스위스	○	○	×	○	×
	미국 DB형				○	
자발적 선택 일임	미국 DC형	규제 없음				

자료: 이경희(2011), 류건식(2013) 등에 기초하여 재작성.

- 셋째, 일시금 수령 시보다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여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 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함.
  -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4%의 연금소득세<sup>3)</sup>를 부과하고 있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 시 감면세액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.
    - 호주 등은 65세 이상이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.
  - 따라서 호주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종신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더불어 긴급필요 자금으로 인한 연금제도 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.
-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사적연금 가입위주의 경영(연금재원 적립단계)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분배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퇴직자산의 연금화<sup>4)</sup>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. **kiri**

3) 2012년 세법개정으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4%의 세율을 적용하고 고령자는 수령시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(55세 이후 5%, 70세 이후 4%, 80세 이후 3%)하였음.

4) 연금수령시점까지 연금재원(pension funds)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단계가 적립단계(accumulation phase)라면, 적립된 재원을 약정한 방식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지급하는 단계가 분배단계(decumulation phase)이므로 연금화(annuitization)는 분배단계에 해당됨.